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8일

우정읍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70-09-20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	거주불명등록이전 2025-04-28